

5. 전문위원 검토요지

- 본 폐지조례안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 의회에 설치 운영하는 민의수렴처리기구로 고성군의회에 제출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하였으나,
- 군민의 요구 사항이 복잡하고 다양하여 의원 1명이 처리하기 어렵고, 중요 사안은 상임위원회별로 활동하여 운영의 실익이 없어 검토결과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.

7. 토 론 : 없음.

8. 심사결과

- 2019. 10. 16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